서식 1-4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

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

(뒷 면)

○ 일자별 활동계획 ※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·단체 작성

※ 격리면제 전체기간(최대 14일, 인도적 목적 최대 7일)에 대해, 방문장소 및 대상(사업 파트너 등)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(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), 이동시 교통편 관련 정보 포함**(대중교통 이용 불가)** <예> 자차 또는 초청기업 차량 이용 등

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.

※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, 제3자(복지부, 질병관리청, 외교부 및 재외공관, 법무부, 국토부, 경찰청, 보건소 및 의료원,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·의료기관 등) 제공에 동의합니다. (동의 □ 미동의 □)

신청인 ○ ○ ○ (인 또는 서명)

신청일 :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보증인(초청기업·단체 등 대표) : (서명 또는 인)

주ㅇㅇ대한민국 대사(총영사) 귀하